

대한민국 재외선거
- 이렇게 합니다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

제출일자 2010. 3. 10. 총 1면

www.nec.go.kr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국외부재자신고 제출서류 : 국외부재자신고서, 여권사본

- 국외부재자신고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 일부터 선거일 전 60 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을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 부터 선거일 전 60 일까지 『국외부재자 신고서』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) ③주소 ④거소(포마자 대문자로 기재)를 기재한 후, 대한민국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우편제출 가능). 『국외부재자 신고서』 서식은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국내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“국외부재자신고”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『국외부재자 신고서』를 관할 구.시.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.(우편제출 가능)

국외부재자 신고 기간

▶ 제 19 대 국회의원선거 : 2011. 11. 13. ~ 2012. 2. 11.

▶ 제 18 대 대통령선거 : 2012. 7. 22. ~ 2012. 10. 20.

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

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

<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>